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94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해민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5. 8.

다. 회 부 일 : 2026. 5.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해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제12조) ☐ 기술이전 - 대상: 중소기업 - 감면율: 기술이전소득의 50% ☐ 기술대여 -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 감면율: 기술대여소득의 25%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9. 12. 31.</u> ☐ 시행일: 2027. 1. 1.

* 이해민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4)

☐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②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은 중소기업이 자

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1998년 세법개정으로 2003년 말을 적용기한으로 하여 신설되었으며, 당시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었음. 그 후, 2005년 말까지 1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된 후 감면혜택의 90% 이상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이유 등¹⁾으로 폐지되었음.

2014년부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도입되어 2015년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있으며,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0.02	3	0.3	0.1	0.1	0.9	0.7	0.7	0.01	0.01
법인세	3	8	6	6	2	5	5	3	2	2
합 계	3	11	6	6	2	6	6	4	2	2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5. 11.

□ 개정안과 같이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이전·대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AI 전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은 단순한 가격·생산능력 경쟁을 넘어 기술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1.9%로 높지 않았고, 해외 기업 등으로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업은 전체의 0.6%였음. 그리고 국내에서의 지식재산 매각·이전 비율은 대기업(5.2%)이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3.4%), 중소기업(1.8%)의 순으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²⁾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이전의 주요 장애요인은 ‘높은 거래비용’이었는데, 이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2) 2025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지식재산처

[기술이전 장애요인]

(단위: %)

구 분	높은 거래비용	수요공급처 발굴 어려움	수요·공급자간 정보비대칭	기술료 산정 어려움	기타
대기업	14	14	29	29	14
중견기업	0	100	0	0	0
중소기업	50	50	0	0	0

자료: 기획재정부, '201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II) -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 다만,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수의 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2020년에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13개인데, 2024년에는 7개 기업으로 감소했음.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개)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신고 법인 수	금액	신고 법인 수	금액	신고 법인 수	금액	신고 법인 수	금액	신고 법인 수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388	6	37	3	438	4	406	3	209	1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13	7	82	7	67	8	92	6	93	6
합계	401	13	119	10	505	12	498	9	302	7

자료: 국세통계포털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소수 기업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실효성 및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당초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문 의 처
02)6788-5155

3)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 제도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세법개정 시 일몰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